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63
----------	-----

2023년 2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3일, 광항기 의원 외 2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2월 24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광항기 의원]

### 가. 제안이유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소유자등', '맹견', '반려동물'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2)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4)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3)
- 5)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6)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7) 동물의 분양·기증, 인도적 처리를 규정하는 용어를 수정함(안 제17조)
- 8) 출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2조)
- 9)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피재황]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음.

최근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가구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26일 상위법이 전부개정되었고 시행<sup>1)</sup>을 앞두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포함된 용어 추가 정의를 비롯해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맹견 출입금지 장소 및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비된 주요 정책과 제도<sup>2)</sup>에 관하여서는 향후 법 시행과 집행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1)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 상위법에서 정비된 주요 내용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위원회 기능을 보완한 것임.

- 세부적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자등’, ‘맹견’, ‘반려동물’ 등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였음.  
 ‘소유자등’은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의무와 금지행위 등에서 소유자를 폭넓게 정의한 것으로 동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것임.
- ‘맹견’은 기존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지칭했으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추가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목적으로 반영된 것임.
- 안 제7조는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줄 착용을 통해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의2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규정하는 것으로 맹견의 범위를 기존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에서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의3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 반영하여 약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를 기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서 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까지 확대한 것임.<sup>3)</sup>
- 안 제22조는 관계 시설의 출입 및 검사와 관련하여 법 제86조(출입·검사 등) 제2항제7호<sup>4)</sup>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sup>5)</sup> 및 영업의 등록을 한 자<sup>6)</sup> 를 명시한 것임.
-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2022년 4월 개정되어 2023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기에 반영치 않으면 상위 법과 불일치로 인한 조례의 법적 정합성 및 법체계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 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변경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3)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3. (생략)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 8. (생략)

4)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5) 영업의 허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6) 영업의 등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

인 개를 말한다.

8.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이”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교수이상”을 “조교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는”을 “소유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7조의2제2항 중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를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으로, “법 제13조의2제4항”을 “법 제23조”로 한다.

제7조의3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제3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를 “시행령 제5조”로, “동물보호법 제41조”를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를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관리중”을 “보호·관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법 제8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1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시행령 제5조”를 “시행령 제5조”로,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조치”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를 “법 제86조”로,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를 “소유자등 및”으로, “법 제32조제1항”을 “다음”으로,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을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94조”로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2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시행령 제5조”를 각각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3조의2”를 “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3조의3”을 “법 제71조제3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2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의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1의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의2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	2의2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 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삭제 <2017. 9. 21.>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

- 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8.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  
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급 등의 사유로 적정  
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  
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9.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  
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  
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이  
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

11.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  
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  
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  
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  
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  
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  
-----  
-----  
-----  
-- “위원회”-----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

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4조제3항-----
3. 법 제51조제1항-----
4.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5. -----



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  
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  
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  
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  
는 자

7. (생 략)

③ ~ ⑭ (생 략)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3  
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  
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  
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  
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  
를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  
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제  
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  
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  
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  
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  
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

조교수 이상

6. -----  
-- 사람

7. (현행과 같음)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 법 제16조  
제3항

② ----- 소유자등은 -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의2(맹견의 관리) ① (생략)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

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7조의2(맹견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  
-- 법 제23조-----.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신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법 제35조-----

-----  
-----.

② -----  
-----  
-- 법 제36조-----  
-----.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  
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  
천인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별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  
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② (생 략)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

③ -----  
-----  
-----  
-----  
-----  
-----

----- 명예동물보호관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현  
행과 같음)

② ----- 법  
제36조제4항-----  
-----  
-----.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

--- 시행령 제5조-----

---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 범위-----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 법 제34조-----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보호·관리 중-----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 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  
· 기준)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③ (생략)

제16조(동물의 반환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  
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준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  
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  
-----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  
· 기준) ① -----  
-----  
----- 범위-----  
-----.

- 1. ~ 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동물의 반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  
-----.

④ (생 략)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생 략)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5조-----  
-----  
-----.

1. -----  
-----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현행과 같음)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

② -----  
-----  
----- 시행령 제5조-----  
-----

----- 법 제45조-----  
-----  
-----.

③ -----

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

-----  
-----  
-----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조치-----  
-----  
-----  
-----.

제18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42조제3항-----  
-----  
-----  
----- . 다만-----  
----- 법 제34조제3항-----  
-----  
-----.

제19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 -----  
----- 법 제11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



진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진 등) ① ----- 법 제59조-----  
-----  
-----  
-----  
-----  
-----

② ----- 법 제4조제3항-----  
-----  
-----  
-----  
-----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  
----- 법 제86조-----  
----- 소유  
자등 및 다음 -----  
----- 등-----  
-----  
-----  
-----  
-----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생 략)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3. ~ 10. (생 략)
- ③·④ (생 략)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94조-----  
-----  
-----  
-----  
-----.

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법 제35조-----  
-----
  2. -----  
----- 법 제46조-----  
--
  3. ~ 10. (현행과 같음)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  
-----  
-----  
-----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  
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시행  
령 제5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조  
의2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  
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에게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용  
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  
다.

시행령 제5조

②

시행령  
제5조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1조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1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662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2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부칙

<삭 제>